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25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 허성무·신영대·허종식

박홍배 · 김문수 · 손명수

김원이 · 강준현 · 서삼석

곽상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규제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미래형 이동수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켰고, 특히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 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을 "미래형 이동수단(미래형 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 31일-----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미래형 선박을 포함한다)---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계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

가.·나. (생 략)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

<u>.</u>
1. (현행과 같음)
2
가
1) (현행과 같음)
2)

다)에	<u>2024 </u> 1	년 :	12월	31일
까지	투자하	는	경우	: 100
분의	15(중:	소기	l업은	100
분의	25)에	상	당하는	는 금
액				

나. (생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u>2027년 12월 31일</u>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